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연구재단

2026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초연구실지원사업 신규과제 신청요강

2025. 1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 국 연 구 재 단

신규과제 신청 시 필수 확인 사항

- ① 2026년 기초연구실지원사업 신규과제 신청 기간 및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한 내에 신청이 완료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 분	내 용
신청 절차	연구자 신청 ▷ 주관연구개발기관 승인 ▷ 신청 완료
연구책임자 신청 기간	2026. 1. 14.(수) 09:00 ~ 2026. 2. 2.(월) 18:00 ※ 신청마감일 : 2026. 2. 2.(월)
주관연구기관 검토/승인가간	2026. 1. 14.(수) 09:00 ~ 2026. 2. 5.(목) 18:00

※ 연구책임자는 신청마감일(2026.2.2.)까지 신청하여야 하며, 연구책임자의 신청사항에 대해
주관연구개발기관장의 승인이 완료되어야 신규과제 신청이 최종 완료됨

※ 신청 마감일에는 온라인 접속이 폭주하므로 **마감일 1~2일 전까지 신청 완료 권장**

- ② IRIS를 통한 과제신청을 위해 **접수 전 필수 이행사항**이 있으니 과제신청에 문제가
없도록 반드시 연구책임자 접수기간 시작 전에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연구자) ① IRIS 회원가입, ② IRIS 내 NRI(국가연구자정보시스템)로 이동하여 연구자 전환 동의
(국가연구자번호 발급), ③ NRI 내 학력/경력* 및 주요 연구수행 실적** 정보 등록 필수

* 경력정보에서 근무(소속)부서 등록 필수

** 최근 5년간 수행완료 과제, 수행 중/신청 중 과제 목록 작성

※ ① 및 ② : 연구책임자 포함 참여연구자 전원 필수(학생연구자 포함), ③ : 연구책임자만 필수

② (주관연구기관) IRIS 기관등록, 기관총괄담당자 신청(기관담당자 권한부여), 기관대표자 등록 등

※ 기관대표자 및 기관(총괄)담당자도 IRIS 회원가입 및 연구자 전환 동의(국가연구자번호 발급)가 필수이며, 대표자
정보 미등록 시 연구자가 과제접수를 완료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신청기간 시작 전까지 필수 이행사항 조치 필요**

※ 세부내용은 [별첨(매뉴얼)1-1](연구개발과제 접수 전 필수 이행사항(KISTEP IRIS운영단)) 및 [별첨
(매뉴얼)1-2](IRIS 회원가입(연구자 전환) 및 연구자정보 등록 매뉴얼) 참조

< 주관연구기관 선택 유의사항 >

※ 세부내용은 [별첨(매뉴얼)1-3(주관연구기관 선택 및 승인권한 관련 안내)] 참조

- 과제신청 시 **주관연구기관은 <00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아닌, <00대학교>로 신청요망**

- <00대학교>의 기관정보(기관대표자 등록, 기관총괄담당자 신청, 기관담당자 승인권한 부여 등) 등록 필수

- 승인권한은 산학협력단 기관담당자가 산학협력단 과제뿐만 아니라 본교명(00대학교)으로 신청한
과제까지 모두 승인 가능

※ 현재 <00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만 기관정보(대표자 및 기관총괄담당자 등)가 등록되어 있고, 접수마감까지
시간이 촉박하여 <00대학교>로 정보를 변경하여 신청하기가 어려울 경우, <00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도 신청가능

▶ IRIS 문의처: **IRIS 콜센터 1877-2041** 또는 IRIS 홈페이지>알림·고객>R&D 신문고

- ③ '참여(공동)연구원'은 기존 기초연구실지원사업에서 공동연구원을 의미하는 것으로, IRIS 상에서 공동연구원을 선택할 때의 용어를 일치시킨 것입니다. 접수 시 연구원 구성의 인력 역할을 선택하실 때 '참여(공동)연구원'의 경우 참여연구자(공동)으로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초연구실지원사업 내 연구진 구성 : 연구책임자, 참여(공동)연구원, 참여연구원

- ④ 신규과제 신청 전, **신청요강에 명시된 자격요건 및 준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격 및 제한사항 미충족 시, 사전(요건)검토에서 과제 탈락 처리

※ [붙임2-4]의 신청 자격의 적정성 확인서를 통한 요건사항 최종 확인 필요

1]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자격

- ▶ 과학기술분야 학과/학부(전공포함) 중심으로 기존의 연구기반을 갖춘 소규모 연구그룹이 있는 대학

2] 연구책임자의 자격

- ① 국내대학 소속 이공분야 전임교원 여부(신청마감일 기준 주관연구개발기관 재직)
- ② 총 연구기간 동안 재직 보장 여부
- ③ (의약학 분야 신청 시) 주관연구책임자 소속이 의학분야(의·치·한의학) 임상교실인 경우 신청 불가

3] 참여(공동)연구원의 자격

- ▶ 국내외 대학 소속 교원(전임·비전임) 여부

4] 신청 및 참여제한

- 국가연구개발사업 공통사항

- ① 연구책임자 및 연구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과제 3책5공 초과여부
- ② 연구책임자 및 연구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해당여부

- 기초연구사업 공통사항

- ① 2026년도 기초연구 집단연구사업 신규과제에 연구책임자 또는 참여(공동)연구원으로 중복신청 여부
- ② 기초연구 집단연구사업 연구책임자 또는 참여(공동)연구원으로 현재 수행 여부
- ③ 현재 리더연구 연구책임자의 기초연구실 신규과제 연구책임자 지원 여부

5] 공동연구진 구성

- ▶ 공동연구진(연구책임자+참여(공동)연구원)을 3~4인으로 구성했는지 여부
- ▶ (심화형) 동일 주관연구개발기관 소속 연구자 3명 이상, 신진연구인력 1명 이상 포함되었는지 여부
- ▶ (개척형) 신진연구인력 2명 이상 포함되었는지 여부

6] 기타요건

- ▶ 주관연구개발기관 협약서 제출 여부
- ▶ 박사후연구원 연구 참여 계획 작성 여부

※ 상기 사항 외 신청요강에 명시된 자격요건 미충족 시, 사전(요건)검토 탈락

목 차

I. 2026년 사업 개요

1. 사업 목적	1
2. 신규과제 지원 내용 및 규모	1
3. 2026년 추진 일정	1
4. 2026년 중점 추진 방향	2

II. 신규과제 신청

1. 신청 기간 및 제출 자료	4
2. 신청방법 및 접수 시 유의사항	5
3. 신청자격 및 제한사항	6
4. 연구과제 및 공동연구진 구성	9
5. 기타사항	10

III. 신규과제 선정평가

1. 평가 기본방향	12
2. 평가 절차 및 방법	12
3. 평가 항목 및 배점	13
4. 차별성 검토	13

IV. 연구개발비 지급 및 관리

1. 연구개발비 지급	14
2. 연구개발비 사용 및 관리	14

V. 향후 관리사항

1. 연차보고서 제출 및 최종평가	16
2. 성과 관리	16
3. 지원 중단 과제 관리 강화	18

VI. 기타 사항

붙임 1. 신청 자격의 적정성 확인서	25
2. 기초연구실 FAQ	27
3. 연구개발비 사용 용도	35
4. 기초연구본부 학문단별 전문위원(RB; Review Board)분야	40

I 2026년 사업개요

1 사업 목적

- 특정 연구주제 중심의 소규모 기초연구 그룹을 지원하여 국가 기초연구 역량 강화

구 분	목 적
심화형	기존 연구를 심화하는 다양한 형태의 연구를 지원해 소규모 연구집단을 체계적으로 육성
개척형	국내에서 거의 시도되지 않은 새로운 분야의 창의적·도전적 연구 지원을 통해 역량 있는 젊은 연구자의 성장 지원

2 신규과제 지원 내용 및 규모

□ 지원규모 및 기간

구 분	세부 내용
과제 수	• 심화형 : 85개 내외, 개척형 : 37개 내외 ※ (심화형만 해당) 신규과제 선정 시 지역대학* 선정 과제 수 비율을 최저 30% 수준에서 고려 * 주관연구개발기관(연구책임자 소속) 기준으로 수도권(서울/경기/인천), 4대 과학기술특성화대학 (KAIST, GIST, DGIST, UNIST) 및 POSTECH 제외 대학
과제당 연구개발비	• 연 5억원 이내(12개월분, 간접비 포함)
총 연구기간	• 3년(36개월) 지원 ※ 총 연구기간 : '26.7.1.~'29.6.30.

※ 신청접수, 평가 결과 및 예산사정에 따라 선정 규모는 변동될 수 있음

3 2026년 추진 일정

일정	내용
2026. 1. 14.(수) ~ 2026. 2. 2.(월)	연구책임자 신청 기간
2026. 1. 14.(수) ~ 2026. 2. 5.(목)	주관연구개발기관 검토·승인 기간
2026. 3월 ~ 5월 중	토론평가 실시
2026. 6월 중	기초연구사업 추진위원회 심의
2026. 7. 1.	신규과제 연구개시

※ 상기 일정은 추진 상황에 따라 향후 변동될 수 있음

4 2026년 중점 추진 방향

【공통사항】

- 소규모 공동연구 사업으로서의 실질적인 공동연구 활성화 도모
 - 연구책임자 역량 등 개인 중심이 아니라, 연구원들 간의 유기적 협력 활성화, 공동 연구실적의 우수성 등 ‘연구그룹’ 중심으로 평가
 - 성과평가 시 기초연구실 논문 성과 중 공동연구진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발표한 SCI 논문 비율 확대 정도 및 공동연구 실적의 질적 수준 점검
- (사업구조 재조정) 기초연구실 유형 중 차별화 요소가 부족한 융합형을 심화형으로 통합하여 사업구조를 단순화*하고 사업의 정체성을 강화
 - * 기존 심화형/개척형/융합형 구조를 심화형/개척형으로 개편
- (평가 단계 축소) 간소화된 평가 방식 도입을 통한 연구자 평가 부담 완화
 - 기존 2단계(토론평가-발표평가)로 진행되었던 평가를 1단계(토론평가)로 축소
- (평가 신뢰도 증진) 평가위원 개별 점수제 도입을 통해 평가의 독립성과 전문성 확보 및 피평가자 신뢰 증진

기존	개선
평가단 선정 과제 추천/비추천	평가위원 개별 점수 부여

- (신진연구인력 자격 완화) 연구자 생애주기를 고려한 신진연구인력 자격 요건 완화를 통해 대상자를 확대하고, 개인연구사업과의 자격 기준을 통일하여 연구자 혼란 방지
 - 기존 신진연구인력 기준(박사학위 취득 후 7년 이내, 만 39세 이하 연구자)에 ‘최초 조교수 이상의 직위로 임용된 지 5년 이내인 연구자’ 추가
- (젊은 연구자 참여 확대) 공동 또는 참여연구원 구성 시 박사후연구원 1명 이상이 참여하도록 하여 우수 젊은 연구자 육성을 강화함(2차년도부터 참여 필수)
- 연구 지속성·자율성 보장, 연구자의 책무성 준수 등을 위한 기준 적용
 - 주관연구기관은 연구기간 동안 연구책임자의 재직을 보장하여야 함
 - 주관연구기관 변경은 허용되지 않으며 연구책임자 변경 시 허용 사유

이외는 중단 원칙 적용(아래 허용 사유 해당 시 특별평가를 통해 변경)

〈 집단연구사업 연구책임자 변경 허용 사유 〉

구분	세부 내용
신분변동 (공직 등 임명)	국공립·사립대학교 총장, 공공기관의 장(또는 임원), 공무원(국회의원, 장(차)관 포함) 등 공직, 정부 중앙부처 및 산하기관의 상근 관리자 직책으로 임명되어 연구수행이 제한된 경우
천재지변, 사망, 질병, 육아 등	홍수, 지진 등의 천재지변, 화재, 폭발, 폭동, 소요, 동원령 선포, 전쟁의 위협 또는 존재, 사망, 불구, 폐질, 사고, 장기입원, 질병휴직, 출산·육아 등에 의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과제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특별평가를 통해 인정된 경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5조1항1호에 따라 집단연구사업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과정에서 제31조제1항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가 발생하여, 특별평가를 통해 연구책임자 변경이 인정된 경우 ※ 변경 사유(불가피성) 및 시점(잔여 연구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심화형 적용사항】

○ 연구여건이 열악한 지역대학의 역량 강화 지원

- 선정평가 시 수도권 및 지역 소재 대학을 동일 패널에서 평가하되, 연구여건이 열악한 지역대학의 상황을 감안하여 지역대학* 선정 과제 수 비율을 최저 30% 수준에서 고려

* 주관연구개발기관(연구책임자 소속) 기준으로 수도권(서울/경기/인천), 4대 과학기술특성화대학(KAIST, GIST, DGIST, UNIST) 및 POSTECH 제외 대학

Ⅱ 신규과제 신청

1 신청 기간 및 제출 자료

□ 신청 기간

구 분	내 용
신청 절차	연구자 신청 ▷ 주관연구개발기관 승인 ▷ 신청 완료
연구책임자 신청 기간	2026. 1. 14.(수) 09:00 ~ 2026. 2. 2.(월) 18:00 ※ 신청마감일 : 2026. 2. 2.(월)
주관연구기관 검토/승인가간	2026. 1. 14.(수) 09:00 ~ 2026. 2. 5.(목) 18:00

- ※ 연구책임자는 신청마감일(2026.2.2.)까지 신청하여야 하며, 연구책임자의 신청사항에 대해 주관연구개발기관장의 승인이 완료되어야 신규과제 신청이 최종 완료됨
- ※ 신청 마감일에는 온라인 접속이 폭주하므로 마감일 1~2일 전까지 신청 완료 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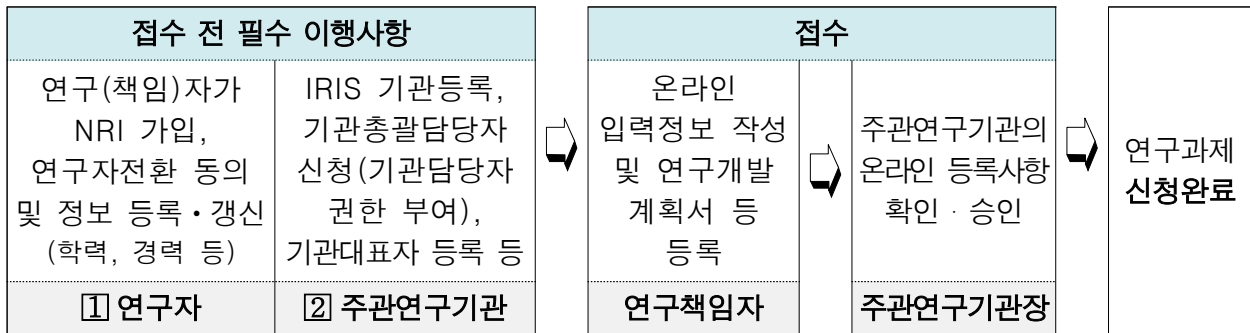
□ 제출 자료(온라인 제출)

- (1단계) 온라인 입력
 - 기본정보, 과제요약정보, 연구기관 및 연구원 정보, 연구개발비 내역, 수행완료 과제, 수행(신청) 중 과제 등 정보 등록
- (2단계) 제출자료(연구개발계획서(연구내용) 및 관련 파일) 업로드
 - ① 연구개발계획서(연구내용) 1부
 - ② 첨부 목록 1부
 - ③ 연구개시일 기준 현재 수행 중인 타 과제 현황 1부
 - ④ 신청 자격 적정성 확인서 1부
 - ⑤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의 제공활용 동의서,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2 신청 방법 및 접수 시 유의사항

□ 신청 방법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https://www.iris.go.kr>)에 연구책임자가 로그인하여 온라인 입력정보 작성 및 연구개발계획서 등 탑재 후 주관 연구기관 확인·승인



※ 접수 전 소속기관의 연구관리 담당자에게 주관연구기관 승인 가능여부를 반드시 확인 요망

□ 접수 시 유의사항

- 연구자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에 접속하여 온라인 입력사항 입력 및 연구개발계획서 등 관련 파일 업로드를 완료하고 [최종확인] 후 오류가 없는 상태에서 [제출] 버튼을 클릭해야만 신청이 유효함

※ 제출완료 후 수정하려면, 연구책임자가 주관연구기관 담당자에게 요청하여 반려받은 후 관련 내용을 수정하고, 반드시 다시 [최종확인] 후 오류가 없는 상태에서 [제출] 버튼을 최종적으로 눌러야 함

※ 최종확인 오류가 없어야만 제출버튼 클릭 가능

- 주관연구기관 승인은 소속기관 담당자가 처리하며, 별도 공문 제출 불필요

※ 연구책임자는 주관연구기관의 승인 완료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소속기관에 문의)

- 마감시간 이후에는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이 자동 차단되어 신청 불가
- 접수 마감시간 전까지 반드시 접수가 완료([제출]버튼 클릭)되어야 함

3 신청자격 및 제한사항

★ 연구책임자 또는 참여(공동)연구원이 신청자격 및 제한사항 미충족 시, 요건검토에서 과제 탈락 처리

□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자격

- 과학기술분야 학과/학부(전공포함) 중심으로 기존의 연구기반을 갖춘 소규모 연구그룹이 있는 국내대학

□ 연구진 구성 및 자격

- 연구진은 연구책임자, 참여(공동)연구원, 참여연구원으로 구성
 - ※ 본 사업의 참여(공동)연구원은 연구책임자와 연구개발과제를 분담하여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자를 의미하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상 참여연구자에 해당
- 연구책임자와 참여(공동)연구원은 아래의 자격 기준 및 요건을 반드시 충족하여야 함
 - (의약학 분야 신청 시) 연구책임자 소속이 의학분야(의·치·한의학) 임상교실인 경우 신청 불가

구분	자격
연구책임자	■ 국내대학 소속 이공분야 전임교원 ※ 단, 연구기간 중 비전임교원으로 전환된 경우는 예외 • 신청 마감일 기준, 주관연구개발기관에 재직 • 연구기간 동안 재직 보장
참여(공동)연구원	■ 국내외 대학 소속 교원(전임·비전임)
참여연구원	■ 학부생 및 석·박사 과정생 ■ 학·석·박사급 연구원(단, 과정생이 아닌 경우 고용계약 체결 필수) ※ 전임교원은 참여 불가

□ 신청 및 참여 제한 ※ p.28 기초연구실 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3책5공 등) 점검사항 반드시 체크

예외 적용 시 주의사항

- ① 3책5공 적용 예외(시행령 제64조제3항제1호)
 - 연구개발계획서의 제출 마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수행이 종료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전부처) 연구개발과제는 3책5공 적용 예외
- ② 기초연구사업 규정 예외(집단연구 1인 1과제 등)
 - 신규과제 연구개시일로부터 10개월 이내 최종종료(연차/단계종료 제외)하는 연구개발과제는 집단연구 1인 1과제 등 예외
 - ※ 대상사업: (과기부) 국가연구소(NRL20), 선도연구센터 기초연구실 / (교육부) 대학중점연구소(램프 포함), 글로벌랩

【정부R&D 공통사항 적용】

- (참여제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제재처분을 받은 연구자는 참여제한 기간이 신규과제 신청마감 전일(2026.2.4.)까지 종료되는 경우 신규과제 신청 가능
- (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5개 이내로 하며, 그 중 연구책임자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3개 이내

【기초연구 집단연구사업 공통사항】

- (기본원칙) 기초연구 집단연구사업*은 연구책임자 또는 참여(공동)연구원으로 1개 과제만 수행 가능

* 기초연구 집단연구사업 : (과기부) 국가연구소(NRL2.0), 선도연구센터, 기초연구실 (교육부) 대학중점연구소(G-LAMP 포함), 글로벌랩

예외

- ▶ 수행 중인 과제가 신규과제 개시일로부터 10개월 이내 종료하는 경우

※ 기초연구 집단연구사업 내 1인 1과제 예외 기준이며, 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3책 5공) 예외 기준에 해당하지 않음

- (신규신청 제한) 2026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교육부 소관 기초연구 집단연구사업에 신청하고자 하는 연구자(연구책임자 또는 참여(공동)연구원)는 집단연구사업 중 1개 과제만 신청 가능

※ 2026년도 집단연구 후속신규에 미선정된 경우, 최초신규 신청 가능

- (기존연구 수행자 신청 제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교육부 소관 기초연구 집단연구사업을 수행 중인 연구자(연구책임자 또는 참여(공동)연구원)는 2026년도 기초연구실 신규과제의 연구책임자 또는 참여(공동)연구원으로 신청 및 참여 불가하며, 리더연구 연구책임자는 2026년도 기초연구실 신규과제 연구책임자로 신청 불가

- 단, 수행 중인 사업이 신규과제 연구개시일(2026.7.1.)을 기준으로 10개월 이내(2027.4.30.)에 최종종료(연차 및 단계 종료 아님)될 경우 신청 가능

- 연구책임자로 동시 선정될 경우 상위사업* 우선 선정

* 집단연구 > 리더연구

□ 타 과제 기수행 연구자의 신규 기초연구실 신청 및 동시수행 가능 여부

타 과제 수행 연구자의 현재 참여 자격			기초연구실 신규신청 및 동시수행 가능 여부		
			연구책임자	참여(공동)연구원	참여연구원
과기부 집단 연구 사업	국가연구소 (NRL2.0)	연구책임자	X	X	○ (전임교원의 경우, 불가)
		참여(공동)연구원	X	X	
		참여연구원	X	○ (자격충족시 가능)	
	선도 연구센터	연구책임자	X	X	X
		참여(공동)연구원	X	X	○ (전임교원의 경우, 불가)
		참여연구원	X	○ (자격충족시 가능)	
	기초연구실	연구책임자	X	X	X
		참여(공동)연구원	X	X	○ (전임교원의 경우, 불가)
		참여연구원	X	○ (자격충족시 가능)	
개인 기초	리더연구	연구책임자	X	○	○ (전임교원의 경우, 불가)
교육부 집단 연구 사업	대학중점 연구소	연구책임자	X	X	X
		참여(공동)연구원	X	X	X
		핵심연구인력	○	○	○
	대학기초 연구소 (G-Lamp)	사업단장	X	X	X
		중점테마연구소	○ (선정 시 G-Lamp 포기)	○ (선정 시 G-Lamp 포기)	○ (전임교원의 경우, 불가)
	글로벌랩	연구책임자	X	X	X
		공동연구책임자	X	X	X
		참여(공동)연구원	X	X	X
		참여연구원	○	○	○ (전임교원의 경우, 불가)

※ '23년 선정 대학기초연구소(G-Lamp) 사업단장의 경우, 소관부서로 별도 문의

4 연구과제 및 공동연구진 구성

□ 연구과제 구성

- 연구주제는 연구그룹 전체가 하나의 연구목표를 가지고 협력하여 연구할 수 있는 주제로 구성하되, 달성하고자 하는 질적 목표를 구체적으로 제시
 - ※ 기초연구실 연구원 대상 공동연구 공간의 별도 확보 권장
- 기초연구실 특성상 하나의 연구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공동연구를 수행하여야 하므로, 연구그룹 구성 시 단일과제로 구성
 - ※ 별도의 세부과제 및 위탁과제 구성 불가

□ 공동연구진 구성

- ★ 연구원 구성 사항 미충족 시 사전(요건)검토에서 과제 탈락 처리
- ★ 해당 공동연구진 구성 요건은 과제수행 기간 중 계속해서 충족해야 함

- 기초연구실 공동연구진*은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여 3~4인으로 구성

* 공동연구진 : 연구책임자 + 참여(공동)연구원(연구책임자 포함 3인 또는 4인으로만 구성 가능)

< 참고: 기초연구실 구성 세부사항 >

구분	심화형	개척형
연구책임자	- 연구책임자는 국내대학 소속 이공분야 전임교원이어야 함 (신청 마감일 기준 주관연구개발기관에 재직)	
연구주제 및 과제 구성	- 연구주제는 연구그룹 전체가 하나의 연구목표를 가지고 협력하여 연구할 수 있는 주제로 구성 - 단위과제(별도의 세부과제 및 위탁과제 구성 불가)	
참여(공동)연구원	- 연구책임자와 동일 주관연구개발기관* 소속 교원 2명 이상 포함 ※ 연구책임자 포함 3인 이상의 연구자가 동일 소속이어야 함	- 연구책임자와 동일 주관연구개발기관* 소속 제한 없음
	- 국내외 대학 소속 교원(전임·비전임) - 최초 연구개시 후 1년(12개월) 이내 참여(공동)연구원 변경 시 차년도 연구비 조정 (p.18 성과목표관리제 참고)	
신진연구인력** 참여	- 연구책임자참여(공동)연구원 중 1명 이상	- 연구책임자참여(공동)연구원 중 2명 이상
박사후연구원*** 참여	- 참여(공동)연구원 또는 참여연구원 구성 시 박사후연구원 1명 이상 포함 (1차년도는 권고사항, 2차년도부터 참여 필수)	

* 고등교육법 제24조,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6조의 "분교"를 제외하고 이원화 캠퍼스는 동일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간주

** 신진연구인력: 박사학위 취득 후 7년 이내(2019.1.1.이후) 또는 만 39세 이하(1986.1.1.이후)인 연구자 또는 최초 조교수 이상의 직위로 임용된 지 5년 이내(2021.1.1. 이후)인 연구자

*** 박사후연구원: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정규 직업을 취득하기 이전인 상태의 연구자

5 기타 사항

□ 기초연구사업 전임, 비전임 교원의 정의

구 분	직 급(예시)	비 고
전임	교수, 부교수, 조교수 등	■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하여 임용된 계약교수 포함 ■ 전임 및 비전임의 세부 직급명은 해당 소속기관의 규정과 지침에 따름
비전임	연구교수, 계약교수, 초빙교수, 겸임교수, 석좌교수, Post-doc 등	

□ 연구개발과제 수 적용(3책5공) 및 예외 관련 주요 내용

연구개발과제 수 적용 및 예외 관련 주요 내용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최대 5개로,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최대 3개로 제한할 수 있다.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조제3호에 따른 외국법인인 연구개발기관(연구개발과제협약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부담하는 연구개발기관으로 한정한다)과 연구개발과제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국내 연구개발기관의 연구자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최대 6개로,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최대 4개로 제한할 수 있다.
-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수를 산정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는 그 수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할 수 있다.
 1. 제9조제2항 또는 제10조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계획서의 제출 마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수행이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2. 사전 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3. 연구개발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4. 연구개발을 주목적으로 하지 않는 기반 구축 사업, 제5조제1호·제2호의 사업, 인력 양성 사업 및 학술활동사업 관련 연구개발과제
 - 4의2. 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업 관련 연구개발과제
 5. 법 제4조 단서의 기본사업 관련 연구개발과제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이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연구개발비를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
 - 가. 법 제2조제3호나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
 - 나.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7. 그 밖에 연구개발 촉진 등을 위하여 연구개발과제 수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할 필요가 있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친 연구개발과제

□ 국제공동연구개발비 계상

- 국제공동연구개발비는 접수 시 계상하지 아니하고, 과제 선정 및 협약 이후 계상을 원하는 연구자에 한하여 IRIS 협약변경 신청을 통한 승인*후 계상·집행 가능
 - * 국제공동연구개발비 계상을 위한 IRIS 승인성 협약변경 신청 시, 국제공동연구개발비 사용 신청서 및 연구개발기관과 국외기관 간 계약서 제출 필요
 - ※ 국제공동연구개발비는 과제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에 소재한 기관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에 그 기관 또는 외국인에게 지급하는 비용
 - ※ 안식년(연구년) 등 파견 비용은 국제공동연구개발비로 계상·집행 불가

Ⅲ 신규과제 선정평가

1 평가 기본방향

- 연구내용의 질적 수준 및 창의성·도전성과 함께 장기적 집단연구 과제로서의 적합성과 분야별 목적성·전략성을 고려하여 평가
- 연구자 스스로 연구내용과 함께 달성하고자 하는 질적 성과 목표 및 연구성과의 수준·유형을 설정하고, 이를 토대로 연구내용의 창의성·도전성 등을 평가
- 과제신청 시 공동연구와 관련한 성과 목표를 설정하고, 최종평가 시 달성 여부 점검
 - 공동연구 연구 실적의 질적 우수성, 네트워크 구축 및 활성화 등 구체성, 연구진 구성의 적절성 등을 평가
- 공동연구 활성화를 위해 유형별 네트워크 운영 기준 수립

유형	유형별 목적	네트워킹 정의	세부 목표
심화형	- 소규모 연구집단 육성 - 심화하는 다양한 형태의 연구지원	다학제·융합 네트워크 구축 - 복수의 연구 분야가 동일한 연구 주제를 해결하기 위한 네트워크 구축·활성화	- 연구 네트워크 규모 - 네트워크 활성화 정도 - 공동 논문·특허 건수 - 참여 연구 분야
개척형	- 새로운 분야의 창의적·도전적 연구지원 - 젊은 연구자 성장 지원		

- 평가위원 개별 점수제 도입을 통해 평가의 독립성 확보
 - ※ (기존) 평가단 선정 과제 추천/비추천 → (변경) 평가위원 개별점수 부여

2 평가 절차 및 방법

- 평가 절차



※ 세부 평가계획에 따라 평가의 절차 및 내용 변경 가능

- (점수 산출 방식) 최고값 및 최저값을 제외한 나머지 원점수의 산술평균을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최종점수 산출

※ 최종점수가 80점 미만인 과제는 선정에서 제외

3 평가 항목 및 배점

평가 항목	심화형	개척형
연구의 창의성(원천성) 및 도전성	30점	40점
연구 내용 및 방법의 적합성(공동연구)	10점	10점
사업목적과의 적합성	10점	10점
공동연구진 역량 및 집단연구 네트워킹의 구체성	40점	30점
연구 성과의 활용 및 기대효과	10점	10점
합 계	100점	100점

4 차별성 검토

구 분	NTIS 차별성 검토	연구계획서 간 차별성 검토
검토 내용	선정후보 과제를 대상으로 NTIS 및 (필요 시) 전문가를 활용한 차별성 검토 실시	신규 연구계획서를 대상으로 당해연도 과기정통부 기초연구사업/교육부 이공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에 최초신규 접수된 연구 계획서와 차별성 검토
관련 근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제1호 선정평가 대상 연구개발과제와 국가연구개발 사업으로 추진됐거나 추진되고 있는 다른 연구 개발 과제와의 차별성 검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1조 올바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하여 연구개발 자료 또는 연구개발성과를 위조·변조·표절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검토 방법	NTIS를 통해 유사과제를 검토하며, 검토 결과 같은 주제라도 심화·발전, 다른 방법론 등이 인정되는 과제는 선정·지원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또는 한국연구재단 e-R&D시스템을 통해 유사과제 검토, 검토 결과 같은 주제라도 심화·발전, 다른 방법론 등이 인정되는 과제는 선정·지원
검토 기준	선정/후보권 과제와 최근 10년(당해연도 포함) 이내 NTIS 차별성 30점 이하 유사과제* 간의 차별성 검토 ※ 검토자(RB/전문가 2인) 모두 '차별성 없음' 이라고 판정한 경우에만 '차별성 없음'으로 최종 확정	차별성 30점 이하 유사과제 간의 차별성 검토 ※ 선정/후보권과 관계없이 실시 ※ 검토자(RB/전문가 2인) 모두 '차별성 없음' 이라고 판정한 경우에만 '차별성 없음'으로 최종 확정
검토 절차	사전검토 및 평가 대상과제 확정 사업팀 평가 실시 → 선정/후보권 과제 확정 학문단 NTIS 차별성 및 신청 연구계획서 간 차별성 검토 사업팀	(RB/전문가 2인을 통한) 차별성 검토 실시 학문단 (차별성 검토 결과를 포함한) 신규과제 선정(안) 마련 PM 협의체

※ 차별성 검토 방법 및 세부 기준은 변경될 수 있음

IV 연구개발비 지급 및 관리

※ 동 사업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시행령」,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등에 따라 관리(법제처, <http://moleg.go.kr/main.html>)

1 연구개발비 지급

○ 연구개발비 구성 항목 : 직접비(인건비 포함) + 간접비

- 간접비 계상식 (직접비 2억원 이상 과제 기준 적용)

○ 직접비 2억원 이상 과제의 간접비 지급기준

= 2억원 × 기관별 간접비율 + (직접비의 2억원 초과분 × 기관별 간접비율 × 30%)

* 현물, 위탁연구개발비, 국제공동연구개발비는 간접비 계상대상에서 제외

※ 간접비비율은 연구개발과제(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된 경우에는 해당 단계를 의미)가 시작되는 시점에 해당 기관의 간접비고시비율을 적용(고시비율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별표6」 참조)

<참고> 간접비 관련 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18조

⑥ 집단연구지원사업의 경우 간접비 총액의 50% 이상을 연구책임자의 발의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

○ 지급시기 : 지원과제 최종 확정 시 협약체결 후 지급

○ 지급방법 : 한국연구재단과 주관연구개발기관 간 협약에 따라 재단이 주관연구개발기관에 연구개발비를 지급

2 연구개발비 사용 및 관리

※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라 협약, 연구과제 수행 및 연구개발비 집행 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시행령」,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등을 준수하여야 함

○ 연구개발비는 연구개발비 카드를 발급받아 협약용 연구개발계획서에 따라 주관연구책임자의 발의에 의해 사용해야 함

○ 사용된 연구개발비에 대해서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이 회계관리 사항을 증빙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함

○ 연구개발비 사용·관리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및 협약용 연구개발계획서 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함

○ 참여제한, 연구개발비 유용 등 주관연구책임자가 연구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황 발생 시 주관연구개발기관(소속기관)의 장은 즉시 재단에 보고하여야 함

※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개발기관(주관연구책임자 포함)의 부적절한 연구개발비의 관리·사용으로 인해 외부기관으로부터 조사, 감사, 자료요구 등의 사안이 발생한 경우 재단에 즉시 보고해야 함

○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 제출 : 연구개발기간 종료일(단계 또는 최종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보고서 제출

※ 연구개발비 사용 후 통합연구관리시스템에 집행 내역을 적시 등록하여야 함

○ 연구책임자는 법규 및 규정에 따라 학생인건비를 공동관리할 수 없으며 학생인건비 공동관리 적발 시에는 과제 해약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및 사업비 환수 조치 적용

<참고> 학생인건비 공동관리 금지 관련 근거 법령 및 주요 내용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33조(연구개발비사용액부당회수 등 금지)

- ① 연구개발기관 소속 임직원(고등교육법 제14조 제2항에 따른 교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참여연구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연구개발비에서 사용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는 행위(이하 "연구개발비사용액부당회수"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연구개발기관 소속 임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인건비 부당회수등"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참여연구자에게 인건비 또는 학생인건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행위
 2.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지원한 연구근접지원인력에게 인건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행위
 3. 참여연구자에게 지급된 인건비 또는 학생인건비를 회수하여 관리 또는 사용하는 행위
 4. 연구근접지원인력에게 지급된 인건비를 회수하여 관리·사용하는 행위
- ③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사용액부당회수 및 인건비부당회수등이 발생하지 아니 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④ 연구개발비사용액부당회수 및 인건비부당회수 등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연구개발비의 사용용도를 위반한 행위로 본다.

V 향후 관리사항

1 연차보고서 제출 및 최종평가

□ 연차보고서 제출

- 각 연차별 당해연도 종료 1개월 전, 연차보고서를 범부처통합연구지원 시스템(IRIS)을 통해 제출, 필요시 연차점검 가능

□ 최종평가

구분	내 용	
보고서 제출	시기	연구개발과제협약 종료일 후 60일 이내 최종보고서 제출 ※ 평가 후 내용을 보완하여 3개월 이내 제출용 최종보고서 제출
	서류	최종보고서 온라인 제출
내용	연구수행의 성실성 및 연구방법·과정의 적절성, 연구결과의 우수성 등에 대하여 토론평가	
절차	① 전문가 평가 최종보고서에 대한 평가 연구재단 ➔ ② 결과 확정 평가 결과 확정 과기정통부 ➔ ③ 통보 연구자 통보 연구재단	
결과 활용	최종보고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최종보고서 및 연구개발성과를 공개하여야 함	

※ 세부 지표 및 방법 등은 별도의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2 성과 관리

□ 연구개발성과의 소유·관리

- (원칙) 연구개발성과의 소유는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개발기관으로 하되, 해당 연구자로부터 승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 관련 근거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6조
- (공동소유) 과제 참여형태, 성과창출 형태 및 기여도 등에 따라 연구개발성과의 소유를 달리 할 수 있음 (관련 근거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2조)
 - ※ 단, 기초연구실은 단위과제로 공동연구개발기관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참여(공동)연구원의 소속기관은 원칙적으로 성과를 소유할 수 없음

- (국제공동연구) 주관연구개발기관 소유 원칙 - 국내 주관연구개발기관이 국제공동연구개발비 등을 통해 외국 소재 제3자에게 연구개발과제의 일부를 수행하게 하는 경우, 국내 주관연구개발기관이 해외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권리를 승계하여 소유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계약서 등에 성과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 항목을 포함하여야 함
- 개인명의 연구개발성과 소유에 의한 위반
 - 지식재산권 성과(특허 등)를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의 이름으로 출원 또는 등록하는 것은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규정 위반 행위임
 - ※ 단,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지식재산권 소유를 포기하는 경우 등 예외의 경우에는 개인이 소유 가능
- 지식재산권(특허 등) 출원·등록 시 연구개발 과제 정보 기재 안내
 - 한국연구재단(NRF)에서 지원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국내 지식재산권(특허 등)을 출원/등록하는 경우 연구개발과제 정보*를 기재하여야 함
 - * 연구개발과제의 명칭, 연구개발과제 번호, 연구개발과제를 지원한 중앙행정기관 등

□ 연구성과 등록 의무

- 논문 실적 등 주요 성과를 온라인으로 등록
 - 연구과제 종료 후 5년 이내 논문 게재, 특허 등록 등의 성과 발생 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이 운영하는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에 수시 입력

□ 연구개발성과 공개

- 최종보고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연구개발성과를 공개하여야 함
- 다만, 연구결과정보의 비공개가 필요한 경우 연구종료 후 3개월 내에 공개제한 요청서를 작성하여 전문기관에 비공개 승인을 요청할 수 있으며 사유에 따라 최대 3년 이내 신청 가능
- 비공개 기간의 연장이 필요할 경우, 비공개 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그 기간이 끝나기 전날까지 연장 요청 및 승인을 받아야 함
 -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5조(연구개발성과의 공개 등)

□ 성과목표 관리제

- 선정 당시 연구계획에 대한 일관성 유지를 위해 최초 연구개시 후 1년 (12개월) 이내 참여(공동)연구원, 연구주제 등 주요 연구내용 변경 시 차년도 연구개발비 조정

구분	기본원칙	적용기간
참여(공동)연구원 변경	차년도 연구개발비의 20% 삭감	연구과제 개시 후 12개월 이내
연구주제 변경	차년도 연구개발비의 30% 삭감	

※ 단, 참여(공동)연구원은 변경 허용 사유*에 해당될 경우 예외이며, 기존 참여(공동)연구원의 참여 중단 없이 신규참여만 하는 경우에는 해당없음

< 참여(공동)연구원 변경 허용 사유 >

구분		세부내용
신분 변동	퇴직	재임용 탈락으로 과제 수행을 할 수 없는 경우 (단, 징계 등의 사유로 인한 경우는 불인정)
	공직 등 임명	국공립·사립대학교 총장, 공공기관의 장(또는 임원), 공무원(국회의원, 장(차)관 포함) 등 공직, 정부 중앙부처 및 산하기관의 상근 관리자 직책으로 임명되어 연구수행이 제한된 경우
천재지변, 사망, 질병, 육아 등		홍수, 지진 등의 천재지변, 화재, 폭발, 폭동, 소요, 동원령 선포, 전쟁의 위협 또는 존재, 사망, 불구, 폐질, 사고, 장기입원, 질병휴직, 출산·육아 등에 의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과제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이직은 참여(공동)연구원 변경 허용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3 지원 중단 과제 관리 강화

- 연구 수행 포기 사유 발생 시,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즉시 한국연구재단에 승인 요청
- 과제 중단 신청 시, 정당한 사유에 대하여 아래의 기준표를 적용하며, 이외의 사유는 원칙적으로 정당한 사유로 인정 불가

〈 수행포기 신청의 정당한 사유에 관한 기준 〉

구 분		세부 내용
신분 변동	이직	타 기관에 채용된 후 과제 수행을 할 수 없는 경우 (과제 관리가 불가능한 기관으로의 이직 등 포함) ※ 연구개시일 이후 6개월 이내의 이직은 정당한 사유로 불인정
	퇴직	재임용 탈락 및 소속기관의 귀책사유(폐교, 파산 등)로 인해 과제 수행을 할 수 없는 경우 (단, 징계 등의 사유로 인한 경우는 불인정)
	공직 등 임명	국공립·사립대학교 총장, 공공기관의 장(또는 임원) 및 공무원(국회의원, 장(차)관 포함) 등으로 임명되어 연구 수행이 제한된 경우
사망, 질병, 육아 등		홍수, 지진 등의 천재지변, 화재, 폭발, 폭동, 소요, 동원령 선포, 전쟁의 위협 또는 존재, 사망, 불구, 폐질, 사고, 장기입원, 질병휴직, 출산·육아 등에 의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과제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질병은 최소 6개월 이상의 치료(입원) 이력 또는 계획이 기관제출용 진단서를 통해 확인된 경우에 한해 정당한 사유로 인정 ※ 출산·육아는 관련 휴직기간이 2년 초과일 경우에 한해 정당한 사유로 인정
타 사업 선정		현재 과제의 최종 종료 전 4개월 이내 또는 단계 종료 전 4개월 이내에 과제와 연계성이 높은 사업으로 이동하는 경우
기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5조에 따른 특별평가를 통하여 수행포기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된 경우 ※ 수행포기의 사유(불가피성) 및 시점(잔여 연구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 정당한 사유 없이 정부연구과제의 수행 포기 시, 연구자의 책무성 제고를 위해 제재처분 및 모든 국가연구개발활동 참여 제한
 - 기준 이외의 사유로 연구 수행 포기를 요청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제재처분 평가단을 통해 연구자 참여제한 등을 심의·확정
 - ※ 참여제한이 확정된 연구자는 참여제한 기간 동안 모든 부처의 과제에 선정되지 못할 뿐 아니라 현재 수행 중인 과제에서도 배제되며, ‘국가연구개발활동’에 일절 참여를 제한하여 과제 수행 외 국가R&D사업 사전기획, 평가위원 활동 등에도 참여 불가

VI 기타 사항

1 논문 사사표기 안내

- 연구성과의 학술지 논문 게재 시, 해당 논문에 사사를 표기해야 함.

▶ 국문표기

이 성과는 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IRIS 과제번호).

▶ 영문표기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NRF) grant funded by the Korea government(MSIT) (IRIS 과제번호).

※ MSIT: Ministry of Science and ICT

※ 성과는 논문, 특허 등 실제 성과 명칭으로 대체 사용 가능

2 국내외 파견연구 관련

- 연구개발과제를 수행 중인 연구책임자가 국내외 기관에 6개월 이상 파견 시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승인 검토단계에서 연구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특별평가를 통해 과제중단 여부 검토
- ※ 연구개시일에 파견 중인 경우, 협약 직후 지체없이 전문기관에 승인 요청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17조(연구개발과제의 수행전념)

제17조(연구개발과제의 수행전념)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 중인 연구책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1. 연구책임자가 외국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체류하려는 경우
2.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연구책임자를 국내외 기관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파견(교육훈련, 출장, 연수 등을 포함한다)하려는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사안 외에 연구책임자가 6개월 이상 계속하여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연구노트 작성 안내

- 관련 규정에 따라 연구자 및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수행의 시작부터 연구성과의 보고·발표 또는 지식재산권의 확보 등에 이르기까지의 연구과정 및 연구성과를 기록한 연구노트를 작성하여 관리
- ※ 관련 근거: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
- ※ 추후 필요 시 연구과제의 질적 성과 및 성실성 평가의 근거로 연구노트 활용

4 특수관계자 참여 관련 안내 사항

-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책임자와 참여연구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4촌 이내 친족이 연구과제에 참여하는 경우와 연구성과물에 미성년 저자를 포함하는 경우, 연차별로 주관연구기관의 장의 검토·승인 후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주관연구개발기관의 검토 시, 특수관계자의 학위 및 전공·연구 실적 및 연구 참여 경력·연구 참여의 필요성 등에 대해 검토·승인 이후 각 항목에 대한 증빙을 첨부하여 전문기관에 요청
 - 전문기관은 주관연구기관에서 제출한 검증자료 및 결과 등을 기초하여 전문가 검토 실시
- ※ 주관연구기관의 실질적 검토 여부를 확인 가능한 증빙 제출 의무화
- ※ 단순행정, 실험보조 등은 참여불가하며,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수행의 전문성, 활용 필수성 및 대체불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승인
- ※ 계속과제 동일 적용

5 사이버 연구윤리교육 이수 의무화

- 기초연구사업 연구책임자 사이버 연구윤리교육 이수 의무화
 - 교육운영 지정기관 :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KIRD)
 - 이수대상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기초연구사업을 수행 중인 연구책임자
 - 이수기간 : 과제 연구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
 - 교육과정 : 연구책임자를 위한 연구윤리(이공계)
 - 교육관련 문의
 - 교육신청 홈페이지 : <https://alpha-campus.kr/>
 - 교육운영 기관 :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KIRD, www.kird.re.kr)
 - 교육운영 콜센터 : 1588-5834, e-kird@kird.re.kr

6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심의 의무화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간대상연구 및 인체유래물 연구 수행 연구자는 연구계획서 제출 후 기관생명 윤리위원회(IRB)의 심의를 받아야 함.

- 각 소속기관(대학 등)에서 IRB에 관련 사항 확인
 - IRB 심의결과 제출관리 등은 연구자와 주관연구개발기관(IRB 포함)에서 담당
 - ※ 전문기관은 필요 시 주관연구개발기관을 통해 IRB 심의여부 결과(심의결과서 및 심의 면제확인서 등) 관리 현황 등을 제출 받아 확인
- 소속기관 IRB 이용이 곤란할 경우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의 공용 IRB에 확인
(※ 문의처 :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02-737-8970~1))

* **인간대상연구**란 사람을 대상으로 물리적으로 개입하거나 의사소통, 대인접촉 등의 상호 작용을 통하여 수행하는 연구, 또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이용하는 정보로써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연구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2조)

7 부실학술활동 예방을 위한 권고사항

- 연구책임자 등은 한국연구재단 지원과제의 연구 결과를 논문으로 발표할 때 관련 학계가 신뢰할 수 있는 건전한 학술지(또는 학술대회)를 활용
- 연구책임자는 참여연구자(학생연구자 포함)들이 연구결과를 논문으로 발표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학술단체가 관련 학계에서 인정할 수 있는 단체인지 확인
 - ※ 연구(책임)자가 부실의심학술지에 게재한 실적이 과제 평가결과(선정단계최종)에 반영될 수 있음

8 연구윤리 확보 및 진실성 검증

- 연구기관은 소속 연구자 및 연구지원인력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하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57조 및 제58조에 따라 부정행위 검증, 조치를 위한 규정을 자체적으로 마련하여 운영해야 함
- 연구기관의 장은 소속 연구자 또는 연구지원인력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이를 검증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결과가 확정된 날 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문서로 보고해야 함
 - ※ 관련 근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1조, 동법 시행령 제57조 및 제58조

9 연구자 연구윤리 의식 강화 및 확산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과제를 신청하거나* 이를 수행하는 행위는 물론 각종 보고서 및 성과를 허위(중복성 포함)로 기재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참여제한 등 조치

※ 관련 근거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1조(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의 금지)

* 주요 연구수행 실적 작성 시 신청 중이거나 수행 중인 과제를 누락한 경우 또는 2개 이상 동시 신청한 과제가 동시 선정되었음에도 과제조정을 하지 않는 경우 등 포함

10 질병관리본부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 인체유래물 이용 안내

- 질병관리본부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으로부터 인체유래물*을 분양 받아 연구에 이용하려는 연구자는 반드시 담당 부서(질병관리본부 생물자원 은행과(분양대표전화 1661-9070))에 사전 확인 후 자원 활용이 가능한 과제에 한해 신청하기 바람

* 인체유래물 : 혈청, 혈장, 소변, 혈액유래 DNA, LCL, LCL유래 DNA 등

11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개발된 화합물 기탁 안내

- 연구개발과제로부터 도출된 논문, 특허, 연구시설·장비 등 연구 성과 분야별로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유통하기 위하여 장관이 별도로 지정한 기관에 등록하거나 기탁하여야 함
- 화합물의 경우, 연구성과 관리·유통 전담기관 지정 고시에 따라 한국화학연구원(한국화학연구원 부설 화합물은행, 042-860-7190)에 기탁하여야 함

12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연구시설 및 수입 신고

- 유전자변형생물체(LMO)를 이용하는 연구자는 유전자 변형생물체의 국가 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련 절차를 이행해야 함
- 시험·연구용 LMO 정보시스템(<https://www.lmosafety.or.kr/mps>) 확인

13 연구실 안전관리 관련 안내 사항

- 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은 관련 규정* 및 가이드라인**에 따라 연구실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함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 국가연구안전정보시스템(<http://www.labs.go.kr>)에서 다운로드 또는 중앙연구안전지원센터 (042-240-6471)로 문의

14 적용 법령

- 동 사업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과학기술기본법」,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 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등을 적용함

※ 관련 규정 조회 : 법제처, <http://moleg.go.kr/main.html>

◆ 아래 신청자격의 적정성 관련 각 항목을 반드시 확인 후 확인 여부를 표기(V)하여 별도 제출

◆ 신청자격 및 제한사항 미충족 시, 사전(요건)검토에서 과제 탈락 처리

구 분		확인 내용	확인 여부
① 주관연구 개발기관 자격여부		주관연구개발기관은 과학기술분야 학과/학부(전공포함) 중심으로 기존의 연구기반을 갖춘 소규모 연구그룹이 있는 대학이어야 함	
		Check (신청요강) p.6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자격	
② 연구책임자 자격여부		① 연구책임자는 신청마감일(2026.2.5.) 기준 으로 국내대학 소속 이공분야 전임교원이어야 하며, 자격요건이 충족되어야 함 ※ 신청 마감일 기준 주관연구개발기관에 재직	
		Check (신청요강) p.6 연구진 구성 및 자격	
		② 연구책임자는 본 연구기간동안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부터 재직이 보장되어야 함	
		Check (신청요강) p.6 연구진 구성 및 자격 (첨부목록) [주관연구개발기관 지원 약속서]	
		③ (의약학 분야 신청 시) 주관연구책임자 소속이 의약분야(의·치·한의학) 임상 교실인 경우 신청이 불가함 (해당 없을 시 미표기)	
		Check (신청요강) p.6 연구진 구성 및 자격 (첨부목록) [(의약학 분야 신청 시) 연구책임자 소속 증빙자료]	
③ 참여(공동)연구원 자격여부		참여(공동)연구원은 국내외 대학 소속 교원(전임·비전임) 이어야 함	
		Check (신청요강) p.6 연구진 구성 및 자격 p.9 공동연구진 구성 (연구개발계획서) [양식A410], [양식A403]	
④ 신청 및 참여 제한	3책5공 초과여부	① '연구개시일 기준 현재 수행 중인 타 과제 현황'에 연구개시일(2026.7.1.) 기준 으로 수행하고 있는 타 국가연구개발사업 현황을 모두 기재하여야 하며, 기재한 수행과제 수가 3책5공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 3책5공에 해당하지 않는 과제의 경우, 붙임. 연구개시일 기준 현재 수행 중인 타 과제 현황의 비고란에 기재	
		Check (신청요강) p.7 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 (연구개시일 기준 현재 수행 중인 타 과제 현황)	
	참여제한 여부	②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제재조치를 받고 있는 연구자는 본 기초연구실 신청과제에 참여할 수 없음 ※ 신규과제 신청마감 전일(2026.2.4.)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제재조치가 종료될 경우에만 참여가능	
		Check (신청요강) p.7 참여제한	
집단연구 중복신청 여부		③ 2026년도 국가연구소(NRL2.0), 선도연구센터, 기초연구실 또는 대학중점연구소(G-LAMP 포함), 글로벌랩 신규과제에 신청한 연구자(연구책임자 또는 참여(공동)연구원) 는 본 기초연구실 신청과제에 참여할 수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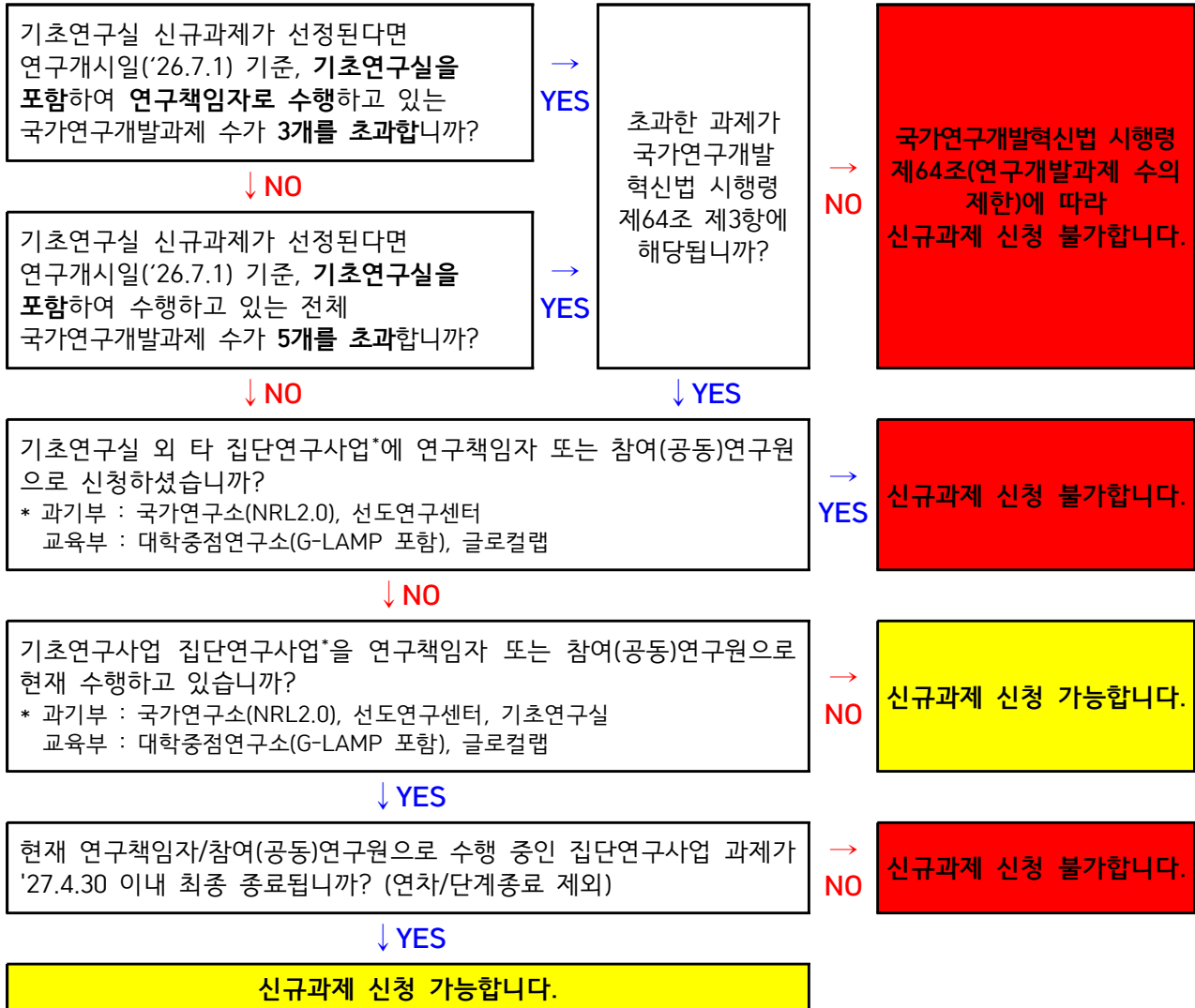
구 분		확인 내용		확인 여부
		Check	(신청요강) p.7 신규신청 제한	
	집단연구 1인 1과제 수행여부	④ 현재 국가연구소(NRL2.0), 선도연구센터, 기초연구실, 대학중점연구소 (G-LAMP 포함), 글로벌 사업에 참여 중인 연구자(연구책임자 또는 참여(공동)연구원) 는 본 기초연구실 신청과제에 참여할 수 없음 ※ 참여 중인 집단연구사업이 연구개시일(2026.7.1.) 기준 10개월 이내 (2027.4.30.)에 최종 종료되는 경우 참여 가능		
		Check	(신청요강) p.7~8 기존연구 수행자 신청 제한 (연구개시일 기준 현재 수행 중인 타 과제 현황)	
	리더연구 연구책임자 수행여부	⑤ (연구책임자) 현재 리더연구 연구책임자는 기초연구실 신규과제 연구책임자로 참여할 수 없음 ※ 현재 참여 중인 리더연구 사업이 기초연구실 연구개시일(2026.7.1.) 기준 10개월 이내(2027.4.30.)에 최종 종료되는 경우 참여 가능		
		Check	(신청요강) p.7~8 기존연구 수행자 신청 제한 (연구개시일 기준 현재 수행 중인 타 과제 현황)	
⑤ 공동연구진 구성요건 충족여부	① 공동연구진(연구책임자+참여(공동)연구원)은 반드시 3명 또는 4명 으로 구성하여야 함(3명 미만 또는 4명 초과 시 요건탈락)			
	Check	(신청요강) p.9 공동연구진 구성 (연구개발계획서) [양식A410], [양식A403]		
	② 유형별 공동연구진 구성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심화형) 참여(공동)연구원은 연구책임자와 동일 주관연구개발기관 소속 교원으로 2명 이상 포함 되어야 하며, 신진연구인력은 연구책임자 또는 참여(공동)연구원 중 1명 이상 포함 되어야 함 - (개척형) 신진연구인력은 연구책임자 또는 참여(공동)연구원 중 2명 이상 포함 되어야 함 ※ 신진연구인력 : 박사학위 취득 후 7년 이내(2019.1.1.이후) 또는 만 39세 이하(1986.1.1.이후) 또는 최초 조교수 이상의 직위로 임용된 지 5년 이내(2021.1.1. 이후 임용)인 연구자			
⑥ 기타 요건	Check	(신청요강) p.9 공동연구진 구성 (연구개발계획서) [양식A410], [양식A403]		
	① (확약서) 주관연구개발기관 확약서를 첨부하여야 함			
	Check	(첨부목록) [주관연구개발기관 지원확약서]		
	② 박사후연구원의 연구 참여 계획을 작성하여야 함(2차년도 이후 필수 참여)			
	Check	(신청요강) p.9 기초연구실 구성 세부사항 (연구개발계획서) [박사후연구원 연구 참여 계획]		

FAQ 목 차

[신청 및 수행 제한 관련]	28
<참고> 기초연구실 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3책 5공 등) 점검사항	28
❶ 기초연구 개인연구사업 연구책임자로 과제를 수행 중입니다. 기초연구실 신규과제 지원이 가능한가요?	28
❷ 현재 기초연구사업 중 집단연구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기초연구실에 참여가 가능한가요?	29
❸ 현재 참여하고 있는 집단연구사업이 기초연구실 신규과제 연구개시일로부터 10개월 이내에 종료된다면 3책5공과 관계없이 신청 가능한가요?	29
❹ 2026.8.6. 종료되는 연구과제 책임자는 3책5공 예외 대상인가요?	30
[신청요건 관련]	30
❶ 기초연구실 심화형의 경우 참여(공동)연구원 소속이 모두 같아야 하나요?	30
❷ 기초연구사업의 전임교원 인정기준은 무엇인가요?	30
❸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UST) 소속인데 공동연구진으로 과제 참여가 가능한가요?	31
❹ 박사후연구원은 주관기관 소속이어야 하나요?	31
❺ 참여연구원의 소속 대학은 꼭 국내대학이어야 하나요?	32
❻ 기초연구실 신규과제 선정 후 참여(공동)연구원이 변경되면 불이익이 있나요?	32
❼ 의과대학병원 소속일 경우에 참여(공동)연구원으로 지원 가능한가요?	32
❽ 대학 소속 교원을 겸직으로 하고 있는 경우에도 지원 가능한가요?	32
[신청서류 관련]	32
❶ 기초연구실지원사업 계획서 분량의 제한이 있는데, 초과되는 경우 어떻게 되나요?	33
❷ 계획서의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의 제공·활용 동의서」는 학생연구원까지 모두 서명해야 하나요?	33
❸ 국제공동연구 및 글로벌 협력 의무는 폐지된 것인가요?	33
[연구개발비 계상 시 유의사항]	33
❶ 연구지원인력에게 연구수당 및 연구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나요?	33
❷ 기초연구실의 간접비 계상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요?	33
❸ 연구지원인력 인건비란 무엇인가요?	34
❹ 연구계획서의 연구개발비 소요명세 작성 시 유의하여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	34

□ 신청 및 수행제한

〈참고〉 기초연구실 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3책 5공 등) 점검사항



㉠ 기초연구 개인연구사업 연구책임자로 과제를 수행 중입니다. 기초연구실 신규과제 지원이 가능한가요?

㉡ 개인연구사업 연구책임자로 1과제, 집단연구사업 연구책임자 또는 참여(공동)연구원으로 1과제 수행 가능합니다. 따라서 3책5공 이내일 경우 기초연구실 신규과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리더연구 연구책임자는 집단연구사업 연구책임자로 중복 수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리더연구 연구책임자로 과제를 수행 중이라면 기초연구실 신규과제 연구책임자로 신청이 불가합니다. (단, 수행 중인 리더연구 과제가 집단연구사업 신규과제 연구개시일(2026.7.1.)을 기준으로 10개월 이내(2027.4.30.)에 최종종료(연차 및 단계 종료 아님) 된다면 신청 가능)

Q 현재 기초연구사업 중 집단연구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기초연구실에 참여가 가능한가요?

A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기초연구 집단연구사업(국가연구소(NRL2.0), 선도연구센터, 기초연구실, 대학중점연구소(G-LAMP 포함), 글로벌랩)의 연구책임자 또는 참여(공동)연구원으로 1개 과제만 수행 가능합니다. 단, 현재 수행 중인 집단연구사업이 신규과제 연구개시일(2026.7.1.)을 기준으로 10개월 이내(2027.4.30.)에 최종 종료(연차 및 단계 종료 아님)된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추가로 2023년도 대학기초연구소(G-LAMP) 사업에 선정되어 참여 중인 연구원의 경우 자격요건 확인을 위해 신청 전 전문기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현재 국가연구소(NRL2.0), 선도연구센터, 기초연구실, 대학중점연구소(G-LAMP 포함), 글로벌랩에 참여 중인 연구자(연구책임자 또는 참여(공동)연구원)는 2026년도 기초연구실지원사업에 신청할 수 없으며, 리더연구 연구책임자는 2026년도 신규 기초연구실 연구책임자로 신청할 수 없음.
- 단, 참여 중인 사업이 신규과제 연구개시일(2026.7.1.)을 기준으로 10개월 이내(2027.4.30.)에 최종 종료(연차 및 단계 종료 아님)되는 경우 참여 가능

Q 현재 참여하고 있는 집단연구사업이 기초연구실 신규과제 연구개시일로부터 10개월 이내에 종료된다면 3책5공과 관계없이 신청 가능한가요?

A 기존에 참여하고 있는 집단연구사업이 신규과제 연구개시일로부터 10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것과 별개로 3책5공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기초연구 집단연구사업의 예외 기준(신규과제 개시일로부터 10개월 이내 종료하는 경우)과 연구개발과제 수 산정 기준(제출 마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수행이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이 다르므로 각각의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기초연구 집단연구사업 1인 1과제는 “기초연구사업”에 적용되는 규정이며, 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3책5공)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제3항에 따라 적용되는 규정으로, 그 예외 기준은 다르며 각각 준수하여야 합니다.

아래 예시와 같이 기존에 수행하고 있는 기초연구실 과제가 2026.10.31.에 종료된다면 기 수행 과제는 기초연구실 중복 수행 허용 기간 내(연구개시일로부터 10개월 이내)에 해당되므로 예외 조건을 충족합니다. 하지만 신규로 기초연구실 과제를 수행하게 될 경우 기존에 참여하고 있는 기초연구실 과제가 3책5공 산정 예외 규정(접수마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는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2026.7.1.~2026.10.31. 동안 6개 과제에 참여하게

되어 신청이 불가합니다.

[예시] 기초연구실 기수행 과제가 '26.10.31.에 종료되는 경우

5과제 수행 중(기 수행 기초연구실 포함)				
(선정 시) 신규 기초연구실 포함 6과제 수행			이후~ 5과제 참여	
「기초연구 집단연구사업 1인 1과제」, (선정 시) 기초연구실 중복 수행 허용 기간				
「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 기존 기초연구실 과제 수 산정 제외 범위				
2026.2.5	...	7.1	...	8.5
...	...	10.31	...	2027.4.30
접수마감	기초연구실 신규 연구개시	접수마감일로부터 6개월	기초연구실 기 수행 과제종료	연구개시일로부터 10개월

Q 2026.8.6. 종료되는 연구과제 책임자는 3책5공 예외 대상인가요?

A 2026년도 신규과제 접수 마감일은 2026.2.5.입니다. 마감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내인 2026.8.4. 종료 과제는 3책5공 제외 대상이지만, 2026.8.5. 종료 과제는 3책5공 제외 대상이 아닙니다.

□ 신청요건

Q 기초연구실 심화형의 경우 참여(공동)연구원 소속이 모두 같아야 하나요?

A 공동연구진을 3인으로 구성하시는 경우에는 연구책임자를 포함한 참여(공동)연구원 3인 모두 동일 소속이어야 합니다. 다만, 공동연구진을 4인으로 구성하시는 경우에는 연구책임자를 포함한 참여(공동)연구원 3인은 동일 소속이어야 하고, 나머지 참여(공동)연구원 1인은 소속이 달라도 무관합니다.

[예시] 심화형 구성 가능한 공동연구진 경우의 수

- 공동연구진 3인 구성 : 연구책임자 1인 + 참여(공동)연구원 2인 모두 A대학 소속이어야 함
- 공동연구진 4인 구성 :
 - ① 연구책임자 1인 (A대학 소속) + 참여(공동)연구원 3인 (A대학 소속)
 - ② 연구책임자 1인 (A대학 소속) + 참여(공동)연구원 2인 (A대학 소속) + 참여(공동)연구원 1인 (B대학 소속)

Q 기초연구사업의 전임교원 인정기준은 무엇인가요?

A 매년 실시되는 한국교육개발원 고등교육 통계조사 기준과 동일하며 다음과 같습니다.

-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교육공무원법」 또는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교수, 부교수, 조교수로 임용되어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교원

① 근무기간을 1년 이상으로 정하여 임용되어 대학에서 전일제로 근무를 하는 교원 ② 신청 마감일 기준 「공무원연금법」 제3조,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2조에 따라 연금에 가입되고,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에 따라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교원 ③ 국·공립 대학 교원의 경우 「공무원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사립대학의 경우 학교법인 정관의 교원에 관한 보수규정에 의하여 보수·수당 등을 지급 받는 교원 ④ 전임교원으로 임용되었으나, 학과나 학부에 소속되지 않고 교약교육 등 교육과정을 담당하는 교육/강의전담교수, 연구전담교수, 산학협력중점교수, 연구소 소속 교원의 경우도 포함 ※ 소속 학과는 수행하는 업무가 가장 밀접한 학과 또는 학부로 입력한다.
■ 국·공립대 기금교수 대학의 「기금교수운영규정」 등에 의해 전임교원과 같은 처우로 계약된 기금교수의 경우로,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한 교원 ① 「교육공무원법」에 의하여 임용되는 교수가 아니므로 공무원연금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나, 「국민연금법」에 따라 국민연금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따른 사학연금에 가입된 교원 ② 보수수준이 전임교원과 동일한(최소 조교수 수준) 전일제(full-time)근무 계약교원
■ HK교수 ① 국·공립대 : 「HK교수 운영규정」에 의해 전임교원 같은 처우로 계약되고 기금교수와 동일한 조건을 충족한 교원 ② 사립대 : 전임교원으로 임용된 교원
■ 산학협력중점교수 산업체 경력자로서 산학협력을 통한 교육, 연구, 창업·취업 지원활동을 중점 추진하고, 산학협력 실적 중심으로 평가받는 교원(「고등교육법」 제15조제2항) ① 국·공립대는 산학협력중점교수 관련 규정에 의해 전임교원과 같은 처우로 임용된 교수가 기금교수와 동일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전임교원으로 포함 ② 사립대는 교육부 산학협력중점교수 세부자격기준을 충족하여 전임교원으로 임용된 교원
※ 전임교원 인정 제외대상 ① 전임교원의 조건을 한 가지라도 충족하지 않은 교원 ② 재임용심사자격 미부여 및 재임용 횟수를 제한하는 교원 ③ 학교교육·지도, 학문연구 및 산학연 협력에 참여하지 않는 교원 ④ 과(부) 학생정원과 직접 관련이 없는 평생교육원, 어학원 등에 배치된 교원

Q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UST) 소속인데 공동연구진으로 과제 참여가 가능한가요?

A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UST)는 연구비 중앙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연구책임자로는 참여가 불가능하고, 참여(공동)연구원으로는 참여가 가능합니다.

Q 박사후연구원은 주관기관 소속이어야 하나요?

A 박사후연구원의 소속이 꼭 주관기관이어야 할 필요는 없으며 타 대학

소속일 경우에도 과제 참여가 가능합니다. 단, 2차년도 연구개시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1명 이상 필수로 참여해야 하며, 중간에 박사후연구원 참여 공백이 있을 경우 이를 소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구비해두시기 바랍니다.

❶ 참여연구원의 소속 대학은 꼭 국내대학이어야 하나요?

- Ⓐ 참여연구원의 소속 대학이 꼭 국내대학일 필요는 없습니다. 외국대학 소속일 경우에도 NRI에 연구자 정보가 등록되어 있다면 참여연구원으로 과제 참여가 가능합니다. 단, 연구책임자는 국내대학 소속이어야 합니다.

※ 국내대학 소속 외국인의 경우에도 NRI에 연구자 정보를 등록한 후에 과제 참여 가능

❷ 기초연구실 신규과제 선정 후 참여(공동)연구원이 변경되면 불이익이 있나요?

- Ⓐ 최초연구 개시 후 1년(12개월) 이내에 참여(공동)연구원 변경 시에는 차년도 연구개발비의 20% 삭감되오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과목표 관리제

- 선정 당시 연구계획에 대한 일관성 유지를 위해 최초 연구개시 후 1년(12개월) 이내 참여(공동)연구원, 연구 주제 등 주요 연구내용 변경 시 차년도 연구개발비 조정

구분	기본원칙	적용기간
참여(공동)연구원 변경	차년도 연구개발비의 20% 삭감	연구과제 개시 후 12개월 이내
연구주제 변경	차년도 연구개발비의 30% 삭감	

❸ 의과대학병원 소속일 경우에 참여(공동)연구원으로 지원 가능한가요?

- Ⓐ 불가능합니다. 기초연구실지원사업의 연구책임자는 국내대학 소속 교원, 참여(공동)연구원은 국내외 대학 소속 교원(전임·비전임)이어야 합니다.

❹ 대학 소속 교원을 겸직으로 하고 있는 경우에도 지원 가능한가요?

- Ⓐ 가능합니다. 다만, 기초연구실 연구책임자 또는 참여(공동)연구원으로 지원할 경우 대학 소속 전임·비전임 교원이어야 하므로 연구원 정보 입력 시 대학 소속 교원으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류

Q 기초연구실지원사업 계획서 분량의 제한이 있는데, 초과되는 경우 어떻게 되나요?

A 계획서 분량은 15페이지(1. 연구개발과제의 필요성 ~ 5. 연구 수행 역량) 이내입니다. 제시된 작성 분량을 위반할 경우 연구계획서 평가 시 초과 분량에 대한 평가 미실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획서 양식을 임의로 삭제 및 추가하실 수 없으며, 글자 크기나 폰트 등은 자유롭게 하시되 가독성이 좋도록 작성하시면 됩니다.

Q 계획서의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의 제공·활용 동의서」는 학생연구원까지 모두 서명해야 하나요?

A 개인정보의 항목(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등)이 계획서 상에 포함되어 있는 분은 모두 서명해야 합니다.

Q 국제공동연구 및 글로벌 협력 의무는 폐지된 것인가요?

A 글로벌 유형은 폐지하였으며, 필요에 따라 국제공동연구개발비 계상 및 글로벌 협력으로 연구를 수행하시는 것은 가능합니다.

□ 연구개발비 계상 시 유의사항

Q 연구지원인력에게 연구수당 및 연구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나요?

A 연구지원인력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참여연구원이 아니므로, 연구수당 계상·집행이 불가합니다. 다만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 이후, 연구과제에 직접 관련된 내용에 한하여 연구활동비 지급은 가능합니다.

Q 기초연구실의 간접비 계상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요?

A 사업규모에 따라 '2억원 초과분 계상식'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 간접비 계상식

= 2억원 × 기관별 간접비율 + (직접비의 2억원 초과분 × 기관별 간접비율 × 30%)

* 현물, 위탁연구개발비, 국제공동연구개발비는 간접비 계상대상에서 제외

○ 또한, 과기정통부 소관 사업 처리규정 제18조(연구개발비의 산정등에 관한 특례)에 의거하여, 간접비 총액의 50% 이상을 주관연구책임자의 발의에 따라 집행하여야 하므로, 간접비 집행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연구지원인력 인건비란 무엇인가요?

A 비영리법인 연구부서*에 소속된 연구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인건비입니다.

* 대학의 경우 산학협력단(산학협력단이 없는 경우 연구처 등 연구지원부서)을 제외한 연구를 직접 수행하는 단과대, 학부, 학과 및 전문연구소(센터) 등

※ 단, 산학협력단 등 연구지원전담조직에 소속된 직원을 상기 연구부서로 인사명령에 의해 전출, 파견하는 경우, 연구지원인력인건비는 간접비에서 계상 및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직접비에서도 계상 및 집행은 가능하나 중복 또는 분할 계상·집행은 금지

Q 연구계획서의 연구개발비 소요명세 작성 시 유의하여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A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어 작성에 오류가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항목	주요 유의사항
인건비	-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자 등의 인건비를 기재 - 연구책임자와 소속기관이 다른 경우 외부인건비로 계상
학생인건비	- 학위과정생만 기재(연구생으로 등록한 수료생 포함) ※ 휴학생은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해 참여 가능 ※ 주관연구개발기관 소속이 아니더라도 학생인건비로 계상 가능
연구시설·장비비	3천만 원 이상의 연구시설·장비를 구축하려고 하는 경우 전문기관 승인 필요 - 원래 연구계획서상에 반영되지 않은 연구시설·통합관리비는 원칙적으로 변경(증액 및 감액 모두 포함) 불가
연구활동비	-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는 원칙적으로 직접비의 40%를 초과하여 계상·집행 불가 -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인정을 받은 경우, 연구활동비(출장비)에서 파견 관련 비용을 계상할 수 있음 ※ 안식년(연구년) 및 교환교수 등 파견 관련 비용은 연구활동비(출장비)로 계상 불가하며, 연구수행 목적 등으로 인한 파견 관련 비용에 한해 사전 승인을 받은 후 집행 가능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지 아니한 연구개발기관 내부 연구공간 및 외부 연구공간에 대한 임차료는 계상 불가
연구수당	- 수정인건비(연구근접지원인력 인건비 제외)의 20% 범위 내에서 계상 가능 - 당초 연구비집행계획에 계상된 연구수당보다 초과집행 불가 - 연구개발과제(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된 경우에는 해당 단계)가 시작되는 시점에 계상한 금액보다 증액 불가 - 실제 인건비 사용 금액이 연구계획서에 계상한 금액보다 적을 경우, 연구수당 또한 실 사용 금액의 20%까지만 지급 가능 - 개인별 연구수당의 최대 지급률은 해당 연구과제의 연구수당 총 지급액의 70%를 초과할 수 없음 (단, 연구책임자를 제외한 참여연구자(학생연구자 포함)가 전혀 없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음)
국제공동연구개발비	- 국제공동연구개발비는 과제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에 소재한 기관 또는 외국인과의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에 그 기관 또는 외국인에게 지급하는 비용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계상할 수 있음 - 국제공동연구 계약 체결 전, 중앙행정기관(또는 전문기관)과 협의 후 진행하여야 함(해외기관과의 계약 체결 후, 국제공동연구개발비가 불승인되어 계약위반이 되는 사례 방지하기 위함) - 과제에 참여하는 해외 연구자(공동 또는 참여연구원)에게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지급하는 것은 내부거래에 해당하여 불가(부처 유권해석) - 안식년(연구년) 등 파견 비용은 국제공동연구개발비로 계상·집행 불가

※ 국가연구개발혁신법(2021.1.1.시행)에 따라 협약 및 연구과제 수행 시에는 「국가연구개발 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 등을 준수하여야 함

※ 세부 집행기준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등을 준수하여야 함.

－ 관련 규정 조회 : 법제처, <http://moleg.go.kr/main.html>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4. 12. 31.>

연구개발비 사용용도(제20조제1항 관련)

1. 직접비

항목	사용용도
가. 인건비	1)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참여하는 연구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2) 비영리법인 연구부서에 소속된 연구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나. 학생인건비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이하 “대학등”이라 한다)이 학생연구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가) 법 제2조제3호나목의 대학 나)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3호의2에 따른 연구기관 다)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에 따른 대학원대학과 대학원대학을 설립할 수 있는 연구기관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참여기관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대학등 또는 외국대학과 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는 학·연 협동과정을 통하여 연구개발 과제에 참여하는 학생연구자 또는 외국대학 소속의 학생 신분의 연구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나)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다)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제3조제4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연구기관 3) 2)가)부터 다)까지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에서 실시하는 6개월 이상의 연수프로그램을 통하여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학생 연구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다. 연구시설·장비비	1) 연구시설·장비 구입·설치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연구 시설·장비의 구입·설치비, 관련 부대 비용 또는 성능향상비 2) 연구시설·장비 임차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연구시설·장비의 임차비 3) 연구시설·장비 운영·유지비: 유지·보수비, 운영비 또는 이전

	설치비 4) 연구인프라 조성비: 연구인프라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인프라 부지·시설의 매입·임차·조성비, 설계·건축·감리비 또는 장비 구입·설비비
라. 연구재료비	1) 연구재료 구입비: 시약·재료 구입비 및 관련 부대 비용 2) 연구개발과제 관리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관리 시스템 등의 운영비 3) 연구재료 제작비: 시험제품·시험설비 제작비용
마. 위탁연구개발비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과제의 일부를 위탁할 때 위탁연구개발기관에 지급하는 비용
바. 국제공동연구개발비	연구개발과제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이 외국에 소재한 기관·단체(연구개발기관인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에 그 기관·단체 또는 외국인에게 지급하는 비용
사. 연구개발부담비	가) 법률로 직접 설립된 연구개발기관이 제19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경우 법 제4조제1호에 따른 기본사업 연구개발비에서 부담하는 비용 나) 법률로 직접 설립된 연구개발기관이 법 제4조제1호에 따른 기본사업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개발과제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연구개발기관에 지급하는 비용
아. 연구활동비	가) 지식재산 창출 활동비: 기술·특허·표준 정보 조사·분석, 원천·핵심특허 확보전략 수립 등 지식재산 창출 활동에 필요한 비용 나)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 기술도입비, 전문가 활용비,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등 외부 전문기술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다) 회의비: 회의장 임차료, 숙기료, 통역료 또는 회의비 등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회의·세미나 개최 비용 라) 출장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국내외 출장 비용 마) 소프트웨어 활용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소프트웨어의 구입·설치·임차·사용대차 비용 또는 데이터베이스·네트워크의 이용료 바) 연구실 운영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무용 기기 및 사무용 소프트웨어의 구입·설치·임차·사용대차 비용, 사무용품비,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비용 또는 연구실 냉난방 및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 비용 사) 연구인력 지원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직접 관련된 교육·훈련 비용, 학회·세미나 참가비 또는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지출된 야근(특근) 식대 아) 해외 연구자 유치 지원비: 외국에 소재한 정부·기관·단체에 소속된 연구자 등 연구개발과제 관련 전문성을 갖춘 연구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 체재비 등 해외 연구자의 국내 유치에 필요한 비용

	자) 종합사업관리비: 연구인프라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목표 달성을 위한 기획·조정 또는 추진과정에 대한 자문이나 관리 비용 차)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료: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료 카) 그 밖의 비용: 문헌구입비, 논문 게재료, 인쇄·복사·인화비, 슬라이드 제작비, 각종 세금 및 공과금, 우편요금, 택배비, 수수료, 공공요금, 일용직(연구실증 참여자 등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참여한 사람을 포함한다) 활용비 등 연구개발과제와 직접 관련있는 그 밖의 비용
자. 연구수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참여하는 연구책임자 및 연구자(학생연구자를 포함한다)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장려금
차. 보안수당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책임자, 연구자(학생연구자를 포함한다) 및 비영리법인 연구부서에 소속된 연구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장려금

2. 간접비

항목	사용용도
가. 인력지원비	1) 연구지원인력 인건비 2) 우수한 연구자 및 연구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연구개발능력성과금 2의2) 대학등의 장이 박사후연구자에게 다음 사유로 지급하는 비용 가) 일시적 연구중단(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참여제한이나 내부 징계에 따른 연구중단은 제외한다) 기간 동안의 급여 나) 신규채용 직후 처음으로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기까지의 공백 등으로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지 않는 기간 동안의 급여 3) 제1호나목2)가)부터 다)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연구기관의 장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다음 사유로 지급하는 비용 가) 3개월 이상의 교육·훈련 기간 동안의 급여 나) 업무상 파견으로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지 않는 기간 동안의 급여 및 파견 관련 비용 다) 일시적 연구중단(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참여제한을 받은 경우 또는 내부 징계에 따른 연구중단은 제외한다) 기간 동안의 급여 라) 신규채용 직후 처음으로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기까지의 공백 등으로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지 않는 기간 동안의 급여 4)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참여하는 연구자 또는 연구지원인력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동안 해당 연구자 또는 연구지원인력에 대하여 연구개발기관이 부담하는 다음의 비용 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 나)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보험료 다) 「국민연금법」 제88조에 따른 연금보험료 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1항에 따른 퇴직급여제도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이 부담하는 비용
나. 연구지원비	1) 기관 공통 비용: 연구개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기관 공통 경비 2) 사업단·연구단 운영비: 연구개발과제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전문적인 과제관리를 위한 사업단·연구단 등이 운영되는 경우 그 운영비용 및 비품 구입 비용 3) 기반시설·장비 구축·운영비: 연구개발 관련 기반시설·장비 운영에 필요한 다음의 비용 중 직접비로 계상되지 않는 비용 가) 연구개발 관련 기반시설 및 장비의 운영비 나) 공동활용시설 내에 구축하는 연구개발시설·장비 구입비 다)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활용비: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활용에 소요되는 비용 4) 연구실안전관리비: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2조제3항에 따라 확보해야 할 연구실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 4의2) 학생산재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3조의2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는 학생연구자의 보험료 5) 연구보안관리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한 다음의 비용 가) 보안장비 구입, 보안교육, 보안취약점 진단, 보안사고 대응 지원 또는 보안컨설팅 등 연구보안 활동 관련 비용 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에 따른 기술자료 임치 관련 비용 다)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국가핵심기술의 보호조치 관련 비용 라) 그 밖에 연구개발과제 보안을 위한 비용 6) 연구윤리활동비: 연구윤리규정 제정·운영, 연구윤리 교육 또는 연구윤리 인식확산 활동 등 연구윤리 확립 및 연구부정행위 예방 등과 관련된 연구윤리활동 비용 7) 연구활동지원금: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학술용 도서·전자정보 구입비, 실험실 운영 지원비, 학술대회 지원비 또는 논문 게재료 등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비용
다. 성과활용 지원비	1) 과학문화활동비: 과학기술문화 확산에 관련된 다음의 활동 비용 가) 연구개발과 관련된 홍보를 위한 과학홍보물 및 행사프로그램 나) 강연·체험활동 및 연구실 개방 다) 홍보전문가 양성 라) 그 밖에 과학기술 문화 확산에 관련된 활동 2)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가) 연구개발기관에서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출원·등록·유지에 필요한 모든 비용

	나) 기술가치평가 등 기술이전에 필요한 비용 다) 표준 활동에 필요한 비용 라) 연구노트의 작성·관리에 관한 자체 규정 제정·운영 또는 연구노트 교육·인식확산 활동, 그 밖에 연구노트 활성화 등에 관련된 비용 3) 기술창업 출연·출자금: 연구개발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국가 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기술지주회사, 학교기업, 실험실공장 또는 연구소기업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	--

※ 비고

1. “학생연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가. 「고등교육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운영하는 전문학사학위과정·학사학위과정·석사학위과정·학석사통합과정·박사학위과정·석박사통합과정 중에 있는 학생 신분의 연구자
 - 나. 가목의 학생연구자가 현행 학위과정을 졸업하여 상위 학위과정 진학이 확정된 경우 상위 학위과정의 첫 학기 시작 전까지 현행 학위과정 중 수행한 연구개발과제를 계속해서 수행하는 자
 - 다.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학술진흥법」 제5조제1항에 따라 학술지원사업으로 추진하는 인문 사회 분야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자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사람
2. “연구개발서비스”란 「연구산업진흥법」 제2조제1호가목 또는 나목의 연구산업을 영위하는 연구사업자가 제공하는 연구개발서비스를 말한다.
 - 2의2.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란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말한다.
 - 2의3. “박사후연구자”란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국내외 대학이나 연구기관에 소속되어 연수 중인 사람(대학에 소속된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원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3. “기술지주회사”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학협력 기술지주회사 또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공공연구기관 첨단기술지주회사를 말한다.
4. “학교기업”이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른 학교기업을 말한다.
5. “실험실공장”이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항에 따른 실험실공장을 말한다.
6. “연구소기업”이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연구소기업을 말한다.

□ 학문단별 RB 분야

학문단	CRB(Chief of Review Board) 분야	RB(Review Board) 분야
자연과학	수학	대수학/이산수학/정보수학
		해석학
		위상수학/기하학
		응용수학
		확률/이론통계
		응용통계
	물리학	입자/장물리/천체물리
		핵물리/플라즈마
		통계물리/생물물리/복합물리
		광학/원자분자물리
		응집물질물리1(유전체/강상관계)
		응집물질물리2(반도체/자성체)
		응집물질물리3(나노/초전도체)
	지구과학	지구/지질과학
		대기과학
		해양/극지과학
		천문/우주과학
	화학	무기화학
		유기화학
		생화학/화학생물학
		물리화학
		분석화학
		재료화학
		고분자화학
		전기화학/광화학/융합화학
생명과학	기초생명	세포생물학
		유전학
		생명정보학
		생화학
		생리학
		식물학
		미생물학

학문단	CRB(Chief of Review Board) 분야	RB(Review Board) 분야
	분자생명	분류/생태/환경생물학
		분자생물학
		신경생물학
		발생생물학
		구조생물/생물물리학
		유전자발현
		면역학
		감염생물학
		노화생물학
		암생물학
	기반생명	식량작물/원예작물
		응용생물화학
		농림생태환경
		동물자원학
		수의학
		수산학
		식품학
		영양학
		생물공학
의약학	기초의학	분자세포의학
		감염의학
		면역의학
		해부·생리학
		약리학
		재생의학
		종양의학
		신경의학
		유전 및 유전체의학
	응용의학	정신의학
		소화기의학
		대사/내분비의학
		심혈관/혈액/신장의학
		호흡기의학
		병리/진단의학
		방사선의학
		생식발달의학
		예방 및 직업환경의학
		외과/응급 중환자 및 수술기의학
		근골격계 및 재활의학
		안과학
		이비인후과학
		피부과학

학문단	CRB(Chief of Review Board) 분야	RB(Review Board) 분야
	치의학	건강증진의학
		두개안면 생물학
		두개안면 형태/병리/재생학
		예방보건/재료/응용기초
	한의학	기초한의학
		응용한의학
	약학	기초생명약학
		응용생명약학
		약품화학 및 천연물
		물리약학 및 약제학
	간호학	기초간호 및 임상간호
		건강증진 및 간호시스템
공학	기계	설계생산
		열공학
		유체공학
		응용역학
		자동화계측
		재료가공
	건설/교통	건축계획 및 설계
		건축설비환경
		지반공학
		수공학
		교통/측량
		토목구조/시공/재료
		건축시공/재료
		건축구조
	소재	금속재료
		반도체/전자재료
		세라믹재료
		나노융복합소재
	화공	화학공정
		화공재료공정
		생물공정
		섬유공학
		고분자공학

학문단	CRB(Chief of Review Board) 분야	RB(Review Board) 분야
ICT·융합연구	전기/전자	전력기술/기기
		계측/제어
		집적회로
		반도체소자
		광소자
		신호처리
		전기/전자 기반 융합
	통신	전자기/통신부품
		통신(원천)
		통신(응용)
		컴퓨터네트워크
		통신 기반 융합
	컴퓨터·소프트웨어	정보보안
		컴퓨터시스템/처리
		소프트웨어
		인공지능(기반 및 학습/추론)
		인공지능(지각/인식)
		인공지능(응용)
		영상/그래픽스
		데이터베이스/정보처리
		컴퓨터·소프트웨어 기반 융합
	바이오·의료융합	의료기기
		바이오센싱 및 나노바이오물질
		바이오소재
		뇌인지과학
	에너지·환경 융합·복합	차세대에너지 융합
		환경
	다학제 융합·복합	산업공학
		교차및초학제융합
		생활과학

문의절차 및 문의처

□ 문의 절차

“문의전화 폭주로 전화 연결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반드시 **공고자료(통합공고문 및 신청요강) 확인 후**
주관연구개발기관을 통하여 질의 요망”

 **문의전 확인** 공고문, 신청요강을 반드시 읽어보세요.

 **문의순서** (1차) 연구자 → 주관연구기관에 문의
(2차) 주관연구기관 → 한국연구재단에 문의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문의처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IRIS 운영단 ☎ 1877-2041

* IRIS 홈페이지 > 알림·고객 > 시스템·서비스문의 > 사용문의 게시판 활용

□ 한국연구재단 문의처

○ 사업 관련 : 사업내용 · 지원조건 등

- 한국연구재단 집단연구지원팀 ☎ (공통번호) (042) 869-6828
☎ (042) 869-6825, 6822

○ 평가 관련 : 선정평가 절차 · 방법 등

- 한국연구재단 기초연구본부 학문단 ☎ (042) 869-내선번호 4자리

구분		자연과학단	생명과학단	의약학단	공학단	ICT·융합연구단
기초연구실	심화형	6557	6534	6054	6543	6564
	개척형	6559	6530		6545	